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4.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2. 4

다. 상 정 일 자 :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98.12.22)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 지원의 실천사항으로 감면조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에게 세제감면을 주기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4급인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등록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중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을 주기위한 조례개정 내용으로 별다른 흠결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